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8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상위법령인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“운영세칙 신설”과 “협의회 회의시 화상회의 방식 추가” 함.
- 또한, 군부대 조직개편에 따른 “부대명칭 변경”과 “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운영의 융통성”을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군부대 조직 개편에 따른 부대명칭 변경(안 제2조제4항제8호)
- 대면회의 제한에 대비한 화상회의 방식 신설(안 제4조제3항)
-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의 융통성 보장 추가(안 제8조제3항)
-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운영세칙 신설(안 제1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)

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5. 1. ~ 5. 2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항제8호 중 “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” 을 “국군방첩부대의 장” 으로
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
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제3항 중 “홍보” 를 “홍보 등의” 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0조(운영세칙 등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전 · 평시 통합방위작전 상황
발생 시 「안산시 통합방위예규」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시민안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시민안전과장 고 재 준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민방위팀장 박 인 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박 정 대 (행정 2743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<u>관할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</u></p> <p>9. · 10. (생략)</p> <p>⑤ · ⑥ (생략)</p> <p>제4조(협의회 회의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8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·재정동원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, 의료·구호, 보급·급식, 통신·전산, <u>홍보</u>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④ · ⑤ (생략)</p> <p>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(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국군방첩부대의 장</u> -----</p> <p>9. ·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협의회 회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제8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홍보 등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운영세칙 등) ① <u>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</u></p>

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전·평시 통합방위 작전 상황 발생 시 「안산시 통합방위예규」를 적용한다.